

『구미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박광석 의원 외 10인

2. 제안이유

- 시민의 금연실천과 흡연예방, 흡연 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등 금연과 관련한 건강생활 실천을 도모하기 위해 우리시의 금연 환경조성과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-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도시공원, 학교정화구역, 버스정류소, 택시승강장 등의 장소를 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하고,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함(안 제4조)
-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의 금연교육을 지원하고, 시민의 흡연 예방을 위해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·운영하며 이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5조)
- 관내에서 발행되는 언론매체(잡지·신문·방송 등)에 흡연을 권장 또는 유도하는 담배광고를 금하게 할 수 있으며, 문화·체육행사 등에 담배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금하게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6조)
-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, 금연활동사업과 금연환경조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함(안 제8조 및 제9조)

4. 참고사항

-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6조, 제8조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「국민건강증진법」의 목적에 따라 시민의 금연실천과 흡연 예방, 흡연 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등 금연과 관련한 건강생활 실천을 도모코자 우리시의 금연환경조성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임

○ 주요 제정내용은

- 조례는 총 10조로 규정하면서 안 제1조 내지 제3조는 조례의 목적, 용어정의, 범위를 규정하고
- 안 제4조 금연권장구역은 도시공원, 학교정화구역, 버스정류소, 택시승강장 등으로 지정하고,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
- 안 제5조 민간단체와 각급 학교의 금연교육을 지원하고 시민의 흡연예방을 위한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·운영하며 이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 할 수 있도록 하였음
- 안 제6조 관내에서 발행되는 잡지·신문·방송 등 언론매체에 흡연을 권장 또는 유도하는 담배광고를 금하게 할 수 있으며, 문화·체육행사 등에 담배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금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

- 안 제8조 및 제 9조 효과적인 금연 및 홍보활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활용·지원토록 하고 금연환경조성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

○ 검토결과

- 시민의 금연실천과 흡연예방, 흡연 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등 금연과 관련한 건강생활 실천을 도모하기 위해 우리시의 금연 환경 조성과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
- 단순한 권고와 행정지도로 선언적 의미가 크다 할 것이며, 시민을 강제할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령의 명시적 위임 근거 없이도 조례제정은 가능함으로 시민의 건강증진 차원에서 우리시의 실정에 맞는 조례제정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